

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】

1996. 10. 14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10. 1
- 나. 제출자 : 시 산 시 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10. 9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0. 14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이상호)

가. 제안 이유

- 서산시시립도서관대산분관 및 지적과 부동산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골 자

- 직제 설치승인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종전 시분청 정원 410명중 1명을 감원하여 409명으로 하고, 사업소 정원 64명중 5명을 증원하여 69명으로 함(안제2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고 있는 서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
- 서산시 시립도서관 대산분관 및 지적과 부동산 관리계의 신설등에 따라 인력의 적정한 배치로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하려는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함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었음

5. 토 론

- 없었음

6. 소수의견

- 없었음

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